

「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춘남 의원

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10인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 조례에 새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수립을 신설 규정하고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더 추가·보완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(안 제3조~제5조)
-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추가(안 제6조)
-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내용 추가(안 제13조)
- 여성기업 확인 및 여성경제인명부 조항 삭제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10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을 신설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가·보완하는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3조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 5년마다 구미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한 것은 체계적인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여성기업지원 시책 등을 여성 경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